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673
- 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(찬성자 11명)
- 발 의 일 : 2019년 5월 24일
- 회 부 일 : 2019년 5월 30일

2. 제안이유

- 청년의회가 연1회 개최되고 있으나,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고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의 시정 참여를 정례화하고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).
- 다. 입법예고(2019. 6. 4. ~ 6. 12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,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.
- 서울시는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청을 신설하였으며,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바 있음.

〈청년자치정부〉

□ 개념

- 청년자치정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를 아우르는 명칭임. 서울시 행정조직 ‘청년청’과 시민 참여기구 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’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임.



○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

-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: 총 1,192명
- 성별(성적지향) : 여성 645, 남성 517명, 기타 30명
 - ※ 성별, 성적체성,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지향으로 조사
- 연령별
 - 만19세~만24세 : 243명

- 만25세~만29세 : 408명
- 만30세~만34세 : 347명
- 만35세~만39세 : 194명

- 서울청년시민위원(오프라인) : 분과활동(상시)을 통해 신규 정책이나 개선과제를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청년시민회의(연4회)를 통해 정책을 설계, 예산 편성에 참여

- 서울청년시민위원 멤버 : 989명(청년시민위원 3월 모집 기준)
- 성별(성적지향) : 여성 522명, 남성 440명, 기타 27명
 - ※ 성별, 성적체성,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지향으로 조사
- 연령별
 - 만19세~만24세 : 277명
 - 만25세~만29 : 365명
 - 만30세~만34 : 235명
 - 만35세~만39 : 112명

- 서울청년정책패널(온라인) :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(상시)

○ 청년청(1청 7팀)

-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집행조직



가. 청년의 참여 확대(안 제10조제1항)

- 안 제10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	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-- 확대하고,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----- ----- -----.

- 현재, 청년청에서는 기존의 연1회 시행하던 행사성 ‘청년의회’를 연4회 ‘서울청년시민회의’로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바, 개정안은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.

〈서울청년시민회의〉
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서울청년의회」를 「서울청년시민회의」로 확대 개편 및 상설화 ○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폭넓은 참여와 상시 참여 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청년시민위원 1,000명 참여 목표, 온라인 청년정책패널 운영 ○ 연1회의 정책제안을 연4회 「서울청년시민회의」 운영으로 상설화 ○ 구 성 :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19세~39세 청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만19~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정넷 멤버가 될 수 있으며, 청년시민위원(오프라인) 및 청년정책패널(온라인)로 구성 - <u>시정참여교육 1회 이수시 ‘서울청년시민회의’의 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되어</u>
--

의제발굴부터 예산편성까지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을 결정함.

- 청년시민위원(오프라인) : 1,000명(정책제안 500명, 예산편성 500명)
- 청년정책패널(온라인) : 인원수 제한 없음
- 참여방법 : 연중 수시 온/오프라인 자발적 참여 신청

- 또한,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정례화는 그간 서울시 정책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,
 - 무엇보다도 대표성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가 서울시 모든 청년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 - 청년활동가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인 청년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한편, 청년 중심의 서울시정 참여가 또 다른 소외계층을 유발시키는 등 계층간 갈등이나 참여의 불균형 및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청년 제안 정책의 점검 및 평가(안 제10조제2항)

- 안 제10조제2항은 시장은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<u>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보장하</u> <u>며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</u> <u>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

- 서울시는 현재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“청년위원 15%목표제”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바,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등 청년의 시정참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청년의 참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<청년위원15%목표제 신규 도입>

- 청년위원 15%목표제 :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확대로 세대균형 시정 도모

- 또한,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에 따르면 청년의 제안을 포함한 시민의 제안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바,
- 동 조항에서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질 우려와 시민의 눈높이에서 거부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제안"이란 시민·단체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, 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직원(이하 "공무원 등"이라 한다)이 서울특별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- 가.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- 나.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다.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- 라.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(陳情)·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- 마.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- 바.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2. "채택제안"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.

제15조(관리)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「국민제안규정」 제9조의2에 따라 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)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정책평가 완료 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실시성과의 평가) ①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안 담당부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.

의사지원팀장 : 박 회 숙

입법조사관 : 신 정 희